

충청북도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도세 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제출일자 : 1991년 12월 21일

나. 회부일자 : 1991년 12월 23일

3. 제안이유

- 현행비과세대상인 교육용재산중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비과세대상을 부동산으로 규정하므로써 사립학교 교육용재산에 대한 도세과세면제 조례를 제정하여 실업계 사립학교 교육용동산에 대한 도세를 면제하여 산업인력양성에 기여하기 위함.

4. 주요골자

- 면제대상 : 학교법인이 학생의 실험, 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중기, 임목, 항공기
- 면제세목 : 취득세, 등록세

5. 검토의견

- 현행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에서 비과세대상이던 교육용재산이 동산·부동산 구분없이 취득시에는 비과세하였으나 1991년 12월 14일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이 공포(법률 제4415호)되므로써 토지·건축물등 부동산만이 비과세토록 됨에 따라 동산인 차량·중기·항공기·임목등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되었음.
- 따라서 사립학교의 실험·실습등 교육용에 직접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계속 도세(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여 증으로서 영세사립학교의 육성지원으로 날로 심각해 지는 산업인력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 대한도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를 제정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원섭위원 이 조례 부칙에 말이예요 왜 2년이라는 시한을 두고 이걸 해놓죠? 2년있다 이조례를 또 개정해야돼요? 시한을 왜 두는 거예요

○ 재무국장 유의재 감면기한을 세법에서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조례를 그 시한을 94년 12월 31일까지

○ 신원섭위원 그러니까 3년있다 이조례를 또 개정해야된다.

○ 재무국장 유의재 물문이겠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 신원섭위원 세법에 몇조로 되어있어요

○ 재무국장 유의재 부칙 제2조입니다.

○ 신원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한 다른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 대한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사립학교 교육용재산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국가유공자소유자동차에 대한도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3시 24분)

○ 위원장대리 김기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국가유공자소유자동차에 대한도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하신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국장 유의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